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



함 양 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위(수)탁 협약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매뉴얼)에 따라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탁자 함양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의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
2. 위치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회동마을 일원
3. 권역면적 : 29.5ha
4. 총사업비 : 7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3년간)
6. 사업내용 : 다목적마당, 공동생활홈, 무선마을방송, 공동주차장,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홍화밭둘레길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제1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39조(농산어촌 거점 지역의 육성),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원칙) 내지 제71조(기술 지원 등),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매뉴얼)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정비 등을 통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 활성화와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의 유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 및 위탁기간) ① “위탁자”는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괄 위탁한다.

1. 회동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시행, 공사감독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2. 주민교육, 마을기획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S/W)관련 업무
3.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농지전용,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가 추진하고 “위탁자”는 본 업무에 필요한 행정지원
4. 편입부지 매입(공공용지 포함)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준공 후 인계업무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추가 되는 업무

② 위탁기간은 본 협약일로부터 시설물 준공 후 인계완료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보조금(국고 및 지방비)은 “위탁자”가 확보하고 “수탁자”가 관리시행하며, 자부담금은 해당사업 주민대표(법인대표)가 확보하여 “수탁자”가 관리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거 동 지구의 사업비 증·감 발생 시 확정된 사업비에 따른다.

제4조(사업비 교부 및 정산) ① 제3조에 정한 사업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위탁자”에게 보조사업비 교부신청을 하고, “위탁자”는 사업추진과 사업비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공사추진 상황과 매년도 사업시행계획, 공정계획표, 년도말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의 수탁업무를 “수탁자”가 종료한 때에는 준공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교부받은 사업비의 잔액은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준공정산서를 승인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 협약추진과 관련 회계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시설물 인계전에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는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 우선 사용하고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한다.
- ④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⑤ 본 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총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수탁자”는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은 가능한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의 이자수익금은 당해년도 말까지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거나,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5조(용지매수 및 보상) ①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공사착공 이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가 추진하고, “위탁자”는 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토지수용 업무를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추진 시 매입하는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 양·증여 및 용도폐지
- 2.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처리
- 3.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협조사항

④ “수탁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2. 토지 및 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 3. 분묘의 개장공고 및 이장 업무
- 4.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지적공부정리 신청업무
- 5. 토지수용에 대한 필요한 서류 작성



- 6. 국·공유지에 대한 양·증여 처리 시 서류 작성
- 7.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① “수탁자”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위(수)탁 협약체결과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사전에 투입하고 “위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기본계획수립 착수 시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제2조의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우선 착수대상 공종을 포함한 전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시행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고시,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는 시행계획승인 조건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구역안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시공자 선정, 공사감독, 기성 및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권한, 책임으로 수행한다.

⑤ “수탁자”는 제2조의 업무대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고시 및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와 보전임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준공검사(부분 준공검사 포함)가 완료되면 준공정산서를 제출하고 “위탁자”는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부분 준공 포함) 후 30일 이내에 인수하여 관리 또는 운영권자에게 인계한다.

⑧ “수탁자”는 공사 준공 후 “위탁자”에게 인계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공사추진 상황과 매년도 사업시행 계획, 공정계획표, 연도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요율 적용 및 대가의 지급) ① 기본계획 수립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매뉴얼) 기본계획수립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위탁요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문화재지표(발굴)조사 등의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할 경우, 소요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계상하되, 사업관리 외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③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공공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 건축부분 설계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과정에서 천재지변, 사업지구 위치변경, “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위탁자”는 중단시점까지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도감독) “위탁자”는 대행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해외출장 수행 등) ① 이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선진 외국의 설계와 공사 등 사업수행기법과 기술습득,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매뉴얼)에 의해 “위탁자”와

“수탁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사항) 본 협약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일반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에 따르며, 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분야별 관련법규 해석 기준에 따른다.

제11조(협약의 이행) “수탁자”는 본 수탁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경제성 분석 등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공 등) “수탁자”는 본 업무 수행 중 취득 또는 수립한 자료 중 사업시행 관련 근거자료나 참고자료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적도, 용지매수 및 보상 관련 제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성과와 본 협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추진상황 보고) “수탁자”는 사업 시행기간동안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위탁자”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중 중대 사안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 시 월간 또는 주간 공정계획 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완료 및 준공) “수탁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준공서(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준공 및 인수인계) ① “수탁자”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위탁자”로 하여 등기하여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고 “위탁자”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 준공전이라도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위탁자”에게 공사 완료된 시설물의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시설물의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인지세의 면제) 본 협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일

함 양 군 수 (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인)